

##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2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'지반 설계기준(KDS 11 00 00)'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4. 5. 3.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건 명

- 지반 설계기준(KDS 11 00 00) : 돌(블록)쌓기옹벽(KDS 11 80 25)

### 2. 구 분 : 부분 개정

### 3. 목 적

-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를 구체화하여 설계기준 사용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한편, 옹벽 설계 시 필요한 지반조사, 벽체 근입깊이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옹벽 설계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

### 4. 주요 내용

- 적용범위를 '옹벽의 전면벽체로 자연석 및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 메쌓기'와 '찰쌓기 방식의 돌쌓기옹벽과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블록쌓기옹벽'으로 구체화
- '돌쌓기옹벽', '뒷길이', '뒤채움', '메쌓기' 등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
- 돌(블록) 쌓기 전 지반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소규모 옹벽은 주변지역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
- 옹벽이 설치되는 기초지반의 강도, 밀도 등 물리적 특성과 비탈면

시공 방식(쌓기·깎기)을 고려하여 벽체 근입깊이를 결정하도록 규정

5. 관련 단체 : 국토안전관리원(☎1588-8788)

6.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,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(☎044-201-3568, 3571),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(☎031-910-04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[www.kcsc.re.kr](http://www.kcsc.re.kr)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